

제273회 고령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1. 11.22(월)10:00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다산면 좌학리 공유지 매각-

검 토 보 고 서



전 문 위 원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제 안 자 : 고령군수

2. 제안이유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고령군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다산면 좌학리 공유지 매각

- 위 치 : 다산면 좌학리 1016번지외 1필지
- 면 적 : 7,514㎡
- 사용용도 : 실증시험포 부지 매입을 위한 자원마련
- 예정가격 : 683백만원

4. 검토의견

-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1건당 취득 및 처분시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 토지의 건당 면적이 취득의 경우 1,000㎡ 이상, 처분의 경우 2,000㎡ 이상인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 검토결과

다산면 좌학리 공유지 매각 건은

당초 직영 양묘장으로 사용하던 농지로서 현재 양묘에 소요되는 비용과 수목 구입 비용의 차이가 없어 양묘장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되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용도폐지 되었으며,

매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의거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할 예정이며, 매각 수입은 2022년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 신규부지 매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좌학리 공유지는 행정재산으로써의 가치가 없는 일반재산인 농지로서 지역주민들이 농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중요 재산, 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 ① 법 제39조 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을 말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림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